

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 공고합니다.

2018. 06. 14.

수원시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-47 번지
3. 도로길이 : 11m
4. 도로 폭 : 0.5m ~ 0.7m
5. 도로면적 : 7m²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0-57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허가(신축)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
8. 편입토지

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연무동	193-47	대	157	7	150	홍○창	
합 계			157	7	150		

9. 공고기간 : 2018. 06. 14 ~ 2018. 06. 28. (15일간)
10. 공고방법 : 시보,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
11. 기타사항

위 도로 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·성명	시설9급 박다혜	전화번호	031-228-5457
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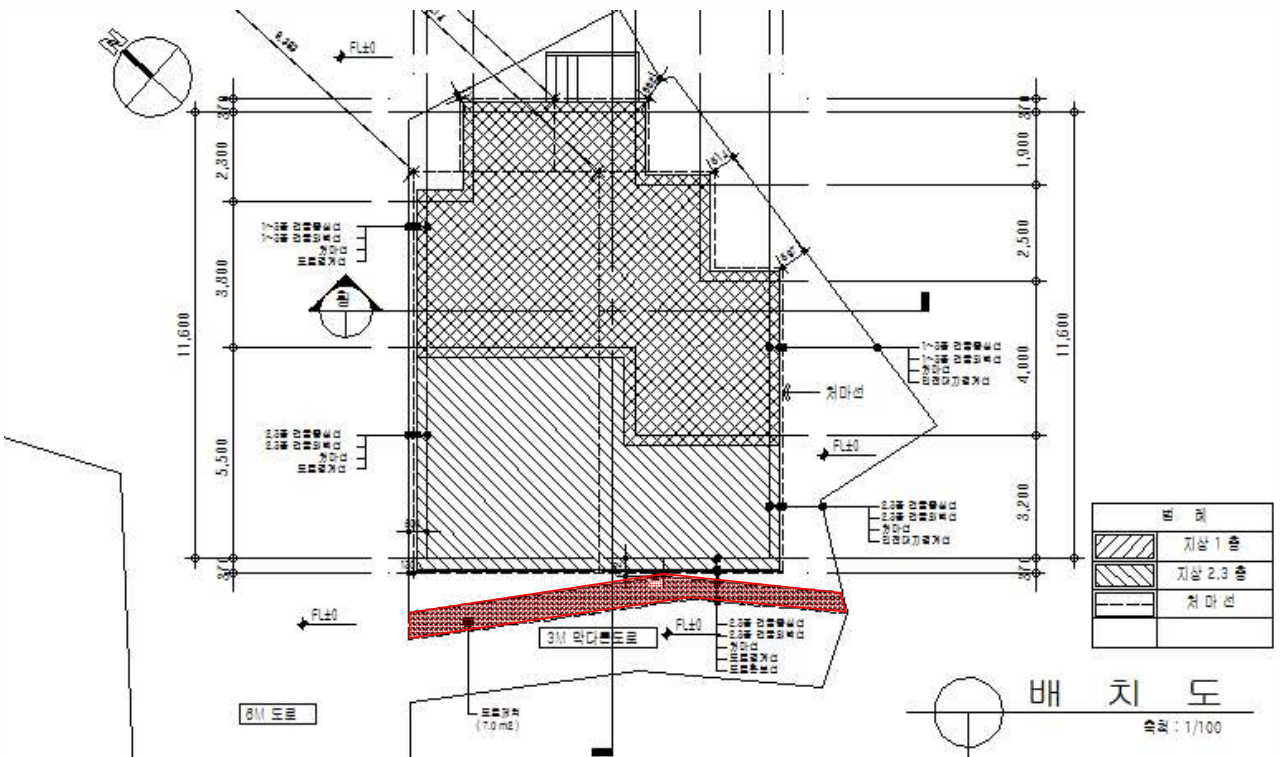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(지적도 첨부)

축척 <임의>